

Monthly Environmental Engineer


2007.

월간

환경기술인

9

회 랑 철

성명	서명
박현철	
송병익	
김충근	
김홍서	



표지인물과의 만남
 "기업인의 의지가 환경개선 좌우"
 - 울산광역시 조기수 환경국

간/담/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기자간담

환/경/노/노/
 국회 제중길 의원 출판기념

"5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전시회" 간

제품신기술=(주)캠스필드코리아
 적 무독성, 무취, 고효율 중금속 제거



(사)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Korea Environmental Engineers Federation



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

2. 회수한 1회용 봉투·쇼핑백의 재활용 촉진

3. 환경장학금의 지급

4.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플라스틱투입량 산식) 영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투입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양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이하는 산출량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의 경우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산출대상이 되는 플라스틱투입량(kg)×10억÷연간 매출액(원)

2. 수입업자의 경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산출대상이 되는 플라스틱투입량(kg)×9천불÷수입시 수입액(미화)

제9조제1항 중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즉시”를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산처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출고실적서, 폐기물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등을 동 정보화시스템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7-30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ill announcement for Air Env. regulation)

1. 개정이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촉매제 도입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로 도입되는 평균배출량 관리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와 사업중단·폐쇄된 배기배출시설의 직권 허가취소 등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고,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촉매제 관리제도 규정(안 제2조15의2,